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141호
- 다. 제출일자: 2023. 8. 14.
- 라. 회부일자: 2023. 8. 21.

2. 제 안 사 유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안 제7조).
- 나.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15.~7.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사항(’23.3.27)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용하여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안 제12조제2항1)에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느 수준까지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동 위원회를

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성하고 있고 실제 위원의 남녀 비율은 5: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안 제9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회의 일자를 연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 사안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근거²⁾로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항	내 용
제6조	○ 위촉직 위원 수의 성비 규정 신설(특정 성별 10분의 6 이하)
제7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친족 포함)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제척 ○ 당사자의 기피, 위원의 회피 신청 규정
제8조	○ 해당 위원의 해촉(비밀누설, 출석률 등) 및 예외(천재지변 등) 규정
제9조	○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제10조	○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사전 통보 규정(회의 개최 15일 전)

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022) p.229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다.
- 관련 입법례: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